

·産·學의 各 構成員 間의 衡平을 맞춰 15人 이내에서 20人 이내로 調整하는 것은 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 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 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서울의 姊妹 友好都市 및 其他 主要都市에 서울館을 設置 하여 海外 主要都市와 交流協力支援, 情報蒐 集, 中小企業의 海外進出支援 및 서울市政弘 報 등의 機能을 遂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바, 地方自治法 第15 條 및 서울館設置推進計劃 市長方針 第1473 號(94.7.26)에 根據하여 서울의 姊妹友好都市 와 海外 主要都市에 서울館을 設置하여 國際 協力活動 據點基地를 確保하고, 서울의 國際 競爭力 提高를 위한 것은 매우 妥當한 案이 라고 判斷되나, 條例의 體系 및 內容上 서 울館이라는 名稱이 對象都市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표시되어 條例案에서 規定한 서울館 만을 고집할 경우 條例制定의 實效性이 의문 시되므로 用語의 正義를 新設하고, 其他 條 例上 不合理한 用語 및 자구를 修正하여 原 案에 대하여 修正可決하였습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執 行部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토대로 關聯 法規와 條例를 면밀히 研究하고 深度 있는 質疑와 答辯을 통하여 신중한 審 査를 한 結果,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 例中改正條例案은 全般的으로 必要성과 合理性 이 있다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고,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은 修正 可決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 告書에 의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一括 報告드린 대로 可決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

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 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을 議決하고 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各各 可決되었 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한다.

제1조중 “국제화의”를 “세계화의”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세계화추진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호 및 제6호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한다.

제3조제1항중 “15인이내의”를 “20인이내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關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關한조례안중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 하는 서울관(이하 “서울관”이라 한다)의 설 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관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